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안)심사보고서

'95. 6. 8.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5. 5. 29.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5. 5. 30.
- 다. 상정일자 : 제30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95. 6. 8.)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춘기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정원승인에 따라 지방정무직공무원(자치단체장)정원 증원에 따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구 본청 정원총수를 증원하고 조례사항중 미비점을 보완·정비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중 구 본청 정원의 총수 1명 증원 (안 제2조제1항)
- 본 조례 제정당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에는 당해 초과 현원을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보완함.(안 부칙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 동개정조례(안)은 1988년 4월 6일 법률 제4004호로 전문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제3항에 자치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

되어 그 동안은 서울특별시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나,

-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8호로 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1995년 6월 30일까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법 제86조제1항에 의해서 선출되는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됨에따라 1995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장의 정원 승인 통보에 의하여 구본청 정원 총수를 1명 증원하는 것이며 부칙 제2항 경과조치의 일부개정은 동조례의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유남렬위원) : 우리구 정원 905명에 구청장이 기 포함되어 있는데 구청장을 지방정무직으로 보할 경우 정원을 1명 증원이 아닌 1명을 감원해야 하지 않은가?
- 답변요지(이춘기 총무과장) : 현재 부구청장을 2급으로 할지 3급으로 할지 아직 미정이나 추후 재조정될 것으로 봄.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제14480호)제21조

의안 번호	404
----------	-----

제출년월일 : 199. 5. 29.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필요성 여부 : 예산조치 필요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정원승인에 따라 지방정무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정원 증원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구본청 정원총수를 증원하고 조례사항 중 미비점을 보완·정비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중 구본청 정원의 총수1명 증원(안, 제2조 제1항)
- 본 조례 제정당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시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당해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규정을 보완함(안 부칙 제2항)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5. 1. 5. 법률 제4877호) 제15조, 제103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1994. 12. 31. 대통령령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905명”을 “906명”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1995년3월14일조례제285호)부칙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의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원과 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당해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1995년 3월 14일 조례 제285호) 부칙 제2항 개정사항은 1995년 3월 14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2 조(정원의총수)	마포구의 본청·직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 2 조(정원의총수)	마포구의 본청·직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 본청(구청) :	905명	1. 구 본청(구청) :	906호	
2. ~ 3. (생략)		2. ~ 3. (현재와 같음)		

현행	개정안
부칙	부칙
①(생략)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①(현행과같음)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에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원과 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당해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5 6. 8.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5. 6. 1.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5. 6. 1.
- 다. 상정일자 : 제30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95. 6. 8.)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춘기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를 “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수를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화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를 “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함.(제명 및 안 제1조)
- 협의회 위원을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동개정조례(안)은 변화와 개혁을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통일된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국제화를 세계화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수도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세계화와 국제화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 답변요지(이춘기 총무과장) : 내용상 별차이가 없으나 현재 “세계화”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로 현실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는 것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